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4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7.

발의자 : 정춘숙 · 김성수 · 송옥주
신경민 · 강훈식 · 김병욱
표창원 · 신창현 · 김정우
권미혁 · 정성호 · 유은혜
이철희 · 양승조 · 홍의락
소병훈 · 추미애 · 박주민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재,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(트라우마)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시·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.

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

이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·보급,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,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심리지원지침의 개발·보급
 2.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, 심리치료 등 심리지원
 3.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·연구
 4.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
 5.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5조의2(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심리지원지침의 개발·보급</u> <u>2.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, 심리치료 등 심리지원</u> <u>3.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·연구</u> <u>4.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</u> <u>5.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</u> <p>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</u></p>

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